

기독교농촌개발원운영위원회 규정

제1장 총 칙

제1조 (명칭)

본 위원회는 기독교농촌개발원운영위원회(이하 '개발원')라 한다.

제2조 (위치)

본 개발원의 사무처는 전북 완주군 이서면 이문리 139-1번지에 둔다.

제3조 (목적)

본 개발원은 기독교 봉사정신으로 미래의 농업과 마을 개발을 담당할 농촌 청년을 교육하고 훈련하며 마을 주민들의 정신적, 물질적인 생활 향상을 도모하여 농촌선교를 목적으로 한다.

제4조 (사업)

본 개발원은 전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아래 사업을 영위한다.

1. 농촌 개발 및 농민의 의식화 교육을 위한 사업
2. 농촌 개발을 위한 지원 사업
3. 자립 농장을 경영하는 사업
4. 기타 농촌 개발에 필요한 사업

제2장 조 직

제5조 (조직)

본 위원회는 위원 15인(여성 1인 이상)으로 조직한다.

제6조 (위원의 선임)

본 위원회는 본회의 목적과 사업에 적임으로 사려되는 인사를 한국기독교장로회총회에서 선임한다.

1. 총회 공천위원회 추천위원

총회 공천위원회가 신학자 2인과 선교동역자 2인, 농촌선교전문가 6인, 운영위원 2인(여성 1인 이상)을 추천한다.

2. 위원회 추천위원

개발원운영위원회가 2인을 추천하여 총회 공천위원회를 거쳐 총회에서 선임한다.

3. 당연직 위원

개발원 원장을 직책상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제7조 (위원의 임기)

1. 위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한다. 단, 최초의 위원 반수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2. 원장의 임기는 4년으로 하고 연임에 제한을 두지 않는다.

제3장 운영위원회

제8조 (임원)

본 위원회는 정기 운영위원회에서 아래 임원을 선임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운영위원장 1인, 서기 1인

제9조 (운영위원회 기능)

본 운영위원회는 아래 사항을 심의 결정한다.

1. 본 개발원의 예산, 결산, 사업계획 및 재산의 취득, 처분, 임대 및 관리에 관한 사항
2. 운영위원 임원 선임 및 보선에 관한 사항
3. 직원의 인사에 관한 사항

4. 기타 본회 규칙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제10조 (운영위원회 소집)

본 운영위원회는 아래와 같이 소집한다.

1. 운영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위원장 또는 운영위원장 직무 대행위원이 소집한다.
2. 운영위원 중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전향과 같이 소집한다.
3. 운영위원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는 회의 7일 전에 소집 통지해야 한다. 단, 긴급하다고 인정되는 사유가 있을 때는 통지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제11조 (서면 결의)

본 운영위원회는 부의 사항의 내용에 따라 서면 결의로써 운영위원회 결의를 대할 수 있다. 단, 운영위원 3분의 1 이상이 정식 회의를 요구할 때는 이에 따라야 한다.

제12조 (정기 운영위원회)

정기 운영위원회는 매년 1회 1월 중에 개최하고 필요가 있을 때는 수시로 위원회를 소집한다.

제13조 (위원회의 정족수)

본 위원회는 위원 정수의 과반수로 개회하고 출석 위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4조 (분과위원회)

본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기획연구분과, 교육지도분과, 기타 필요한 분과위원을 둘 수 있다.

제4장 개발원의 기구 및 직원

제15조 (개발원 기구)

본 개발원의 사업부서는 아래와 같다.

1. 농촌지도부

농촌 개발과 농민의 교육 지도 사업을 주관하되 국내의 기독교 농촌사업 단체와 정부나 민간단체와 협력하여 농촌 개발 사업을 추진한다.

2. 마을 개발 지원부

선정된 마을의 개발 운동을 육성하고 사업을 담당한다.

3. 농장 경영부

본 개발원 직영 농장을 경영하는 일을 연구 실천한다.

제16조 (개발원 직원)

본 개발원의 직원은 아래와 같다.

1. 원장 1인
2. 부장 약간인
3. 기타 직원 약간인

제17조 (직원의 임무)

본 개발원의 직원 임무는 아래와 같다.

1. 원장은 위원회의 결의를 실행하며 개발원 사업의 사무를 총괄한다.
2. 부장은 원장의 지시에 따라 사업 부서에 책임 종사한다.
3. 기타 직원은 원장이 지시하는 사무에 종사한다.

제18조 (직원의 임명)

본 개발원의 직원 임명은 아래와 같다.

1. 원장은 운영위원회가 선임하여 위원장이 임명한다.
2. 부장은 원장의 추천에 의하여 운영위원회가 인준하고 위원장이 임명한다.
3. 기타 직원은 원장이 임명한다.

제5장 자문위원회

제19조

원장의 필요에 의하여 자문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으며 자문을 받을 수 있다.

제6장 자산과 회계

제20조 (자산의 구분)

본 개발원 자산은 이를 기본 재산과 보통 재산으로 한다.

1. 기본 재산은 별지 목록의 재산과 기본 재산으로 편입하는 재산으로 한다.
2. 보통 재산은 기본 재산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

제21조 (자산의 관리)

1. 기본 재산 중 부동산은 한국기독교장로회 총회유지재단에 등록한다.
2. 기본 재산의 매도, 증여, 담보, 농사의 타 목적으로 사용하는 장기 임대 등 기타 처분을 하고자 할 때에는 위원회 3분의 2 찬성으로 결의하며 총회유지재단 이사회에 보고하고 총회의 결의를 얻어야 한다.
3. 기본 재산은 매년 그 목록을 작성하여 한국기독교장로회 총회에 보고한다.

제22조 (자산 및 처리)

본 개발원을 해산하고자 하면 위원회 정수의 3분의 2의 찬성으로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3조 (경비 및 유지방법)

본 개발원 운영 경비 및 사업비는 기본 재산에서 발생하는 과실금 및 기타 수입금으로 이를 충당한다.

제24조 (회계연도)

회계연도는 1월 1일부터 당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25조 (감사)

본 개발원은 연 2차 총회의 감사를 받는다.

제7장 개정 절차

제26조 (개정)

이 규정은 위원 과반수가 출석하고 출석 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현의하여 총회에서 출석회원 과반수 찬성으로 개정한다.

부 칙

1. 이 규정은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2. 이 규정 시행에 따라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가 세칙과 원칙을 만들어 이를 시행한다.

1977년 9월 제62회 총회 제정
1984년 9월 제69회 총회 개정
1985년 9월 제70회 총회 개정
1986년 9월 제71회 총회 개정
2003년 9월 제88회 총회 개정
2005년 9월 제90회 총회 개정
2013년 9월 제98회 총회 개정
2014년 9월 제99회 총회 개정
2015년 9월 제100회 총회 개정
2016년 9월 제101회 총회 개정
2020년 11월 제105회 총회 개정